금융분야 데이터 첨부 2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2018. 3.

금 융 위 원 회

목 차

Ι.	왜 금융분야 데이터인가? 1
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 5
Ш.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9
IV.	기대 효과 25
V.	향후 추진계획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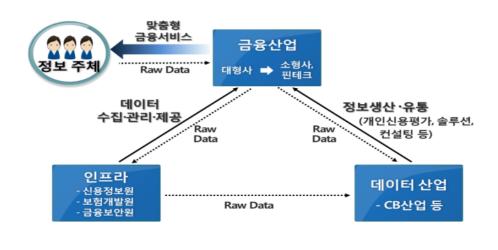
I. 왜 금융분야 데이터인가?

- 1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의의
-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
- □ **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
- o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 전환이 가속화
 - *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알리바바 등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업
- 특히,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 □ 한편, **데이터 주도 경제**는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 o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의 완화**도 가능
 - * 전세계 CEO의 절반 이상(53%)은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Data-enabled startups)이 기존 비즈니스 영역을 해체하고 **새로운 경쟁지로 등장**하고 있다고 응답(15, Capgemini)
- □ 데이터 수집.분석 등에 특화된 **데이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 *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 (ex. 데이터 제공·거래업체, 솔루션 업체, 컨설팅 업체 등)
- **데이터에 기반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
-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알고리즘 개발자, 빅데이터 수집 저장 솔루션 개발자 등
- ** 美 구직사이트(Glassdoor)에서 '데이터 분석인력'은 미국내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

- 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 ◈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은 영역
- □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
 - o 금융분야 데이터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매우 높아,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14, Aite)
 - o ICT、유통업、보건의료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전후방 연관효과도 높아,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
 - * 전세계적으로 금융업-ICT간 M&A는 '10년 223건 → '16년 471건으로 증가(Bloomberg)
- □ 또한, 금융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될 수 있는 분야
- o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가능
 - * 개인의 긍정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금리상품, 보험료 할인상품 등
- □ **금융시스템의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도 **데이터 산업**은 필수적
 - 금융산업은 그 성장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
 - 특히, 대표적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CB: Credit Bureau) 등이 **정보공유·생산** 등을 통해 핵심역할 수행
 - 우리의 경우에도, '03년 카드사태 전후로 금융권 정보공유 인프라*와 CB사 등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안착
 - * 은행연합회(現 신용정보원)를 통해 전 금융업권 개인신용정보가 집중.공유
 - 이를 통해, 담보·보증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금융소외계층** 에게도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가 제공되어 신용대출 가능

참교1 금융분야 데이터의 흐름 및 산업적 특성

- ① 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의 과정에서 본인 데이터를 산업에 제공
- ② **금융산업**은 정보주체, 데이터산업 등에서 제공받은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영업 및 내부경영관리** 등에 활용
 - ① 고객의 신용도위험 등을 판단하여,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
 - 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상품.서비스 개발, 맞춤형 마케팅
 - ③ 위험관리 고도화, 이상거래 감지 등 내부통제 등에도 이용
- ③ 데이터산업.인프라는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정보 생산.유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격차를 해소
 - ① 금융산업 내 수요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
 - ②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신용도, 거래능력, 위험도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생산하여 금융산업 등에 제공
 - ③ 금융산업에 위험평가.관리 모형 등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제공 (데이터 솔루션)
 - ④ 고객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해 **데이터 조사.분석**자료 등을 제공 (데이터 컨설팅)
 - ※ 금융분야에서는 솔루션, 컨설팅 보다는 **개인신용평가 등 정보 생산·제공**을 핵심업무로 하는 **CB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산업이 발달



<u>참교2</u> 신용정보산업(CB산업) 개요

- ◆ CB산업은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i) 금융/재무 데이터의 수집·제공, (ii) 신용등급 생산·제공, (iii) 솔루션 등의 업무 수행
- 수집정보의 종류(개인/기업정보)에 따라 **개인 CB업**과 **기업 CB업**으로 구분
- ① 개인CB업은 고유업무인 개인신용평가와 개인신용정보 수집. 제공 등에 수반되는 부수.겸영업무를 수행 중
 - ① (개인신용평가)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회사 등에 여신심사 기초로 제공
 - ② (솔루션) 개인 신용위험 평가.관리모형의 개발.판매 업무
 - ③ (본인정보조회) 개인에게 본인신용등급 및 신용정보를 제공
 - ④ (본인인증업무)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지정 및 금융위 승인 필요
 - ⑤ (컨설팅) 공공목적의 정보조사 및 데이터 분석.제공 업무 (* 현행 신용정보법상 영리목적 컨설팅은 금지)
- ②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서비스 제공 및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 등을 주로 수행
 - ① (정보조회) 사업개요, 재무정보, 대표자 정보 등 **기업 관련 상세자료**를 수집하여 **기업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금융산업 등에 제공
 - ② (신용조사) **개별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일반** 기업, 공공기관에 제공 → 거래처 및 납품업체 선정에 활용
 - ③ (신용등급제공) 기업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거래상대방 기관에 제공
 - * cf)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는 **회사채**(또는 회사채 발행기업) 등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제공
 - ④ (기술신용평가(TCB))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평균하여 산출한 기술신용등급을 생산하여 금융회사에 여신심사용으로 제공
 - ⑤ (솔루션 업무) 기업 신용위험 평가 · 관리모형의 개발·판매 등

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

1 현황

- (1)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
- □ 해외 주요국 금융시장의 경우 **데이터**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美·EU 등의 경우, 신규 금융상품 개발, 위험관리 고도화,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활용 중
 - * Citi: IBM 슈퍼컴퓨터 '왓슨'을 이용한 중저신용자 대출 심사 정확도 제고
 - * <u>Progressive</u>(美, 보험사):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산정 시스템 도입
 -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통해 금융시장 진입을 가속화
 - * Lenddo (핀테크기업): 통신기록·인성검사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적인 개인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중.저신용자 고객 기반을 확대
 - o 후발주자였던 中國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강국으로의 부상**을 도모
 - * 마이뱅크(알리바바 계열), 위뱅크(텐센트 계열)는 통신·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활용,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
 - ※ Economist('17.7월)는 중국을 '빅데이터 알고리즘 왕국'으로 비유하며 인공 지능(AI) 등 미래 新산업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
- □ 반면,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아직까지 초기단계
 - **신용카드·보험업** 등 일부 업권에서 **마케팅, 보험사기 적발** 등에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중
- o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핀테크 업체도** 美.EU·中 등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

-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달도 미흡하여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미미**
- □ **신용정보산업**의 경우, 그간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구조 및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산업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
- ① **개인 CB시장은 2개사**(NICE, KCB)가 **국내시장을 사실상 양분*** 하는 등 **과점 구조가 고착화**
 - * '16년 영업수익(억원): [NICE] 2,215(75.9%), [KCB] 607(20.8%), [SCI] 97(3.3%)
 - CB사는 양질의 **개인신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령상 제한***으로 다양한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가 곤란
 - * '15년 법개정으로 공공목적 外 영리목적의 데이터 조사・분석 업무가 제한
 - ※ [美國] 대형 3개사(Experian, Equifax, Trans Union) 외에도, 약 400여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개인신용평가 업무 외에도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분석.컨설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
- ② 기업 CB시장의 경우에도 과점구조* 등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 기능이 미흡
 - * '16년 영업수익(억원): [NICE] 652(36.0%), [KED] 572(31.6%), [이크레더블] 292(16.1%)
 - ※ [美國] 대표적 기업 CB사인 D&B가 약 95% 기업체에 대한 여신정보· 부도·소송·담보·세금체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化하여 제공
- □ **평가모형 개발** 등 기본적인 데이터 업무와 **신용정보업과의 개념구분이 현행법상 불명확**한 점도 신규 진입의 제약요인
 - * 현행 신용정보법은 (i)개인신용평가 등 신용도 판단업무 외에도 (ii) 본인 인증업무, (iii) 평가모형 개발업무까지 허가대상 신용조회업으로 규정
 - → 허가가 필요없는 부수업무인 (ii), (iii) 업무도 허가 대상으로 혼동할 소지

- 2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이유
- □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편
 - ※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실태(총 9개부문) 중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낮음('15년, 금융研)
 - o '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 등으로 금융권 데이터 활용이 **금융회사의 수익에만 기여**한다는 인식 등이 상존
 -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 (Thin filer)를 **제도권 금융에 포섭**할 기회조차 잃는 **모순 발생**
- □ 또한,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와는 반대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를 도입.유지
 - 美·中·EU 등은 문화.법제도적 배경 및 적극적인 정부지원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 반면, 우리의 경우 그 전부터 강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정보 보호 규제가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더욱 강화
 - .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 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BBCnews, '13.6월)
 - .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수준은 조사대상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활용에 큰 제약요인(에널리스트 메이슨, '14년)
- □ 특히, 정보의 수집·분석 등 데이터 활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
 - ① 개인정보의 수집시 엄격한 사전동의를 요구하여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에 비해 정보수집에 제약
 - * 일정기간 내 정보주체의 특별한 거부 조치가 없으면 정보 활용을 허용

- ② 빅데이터 분석.이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
 - 현행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불확실성¹⁾과 엄격한 비식별조치 요구²⁾**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 요인
 -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하여 분석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식별조치의 기준 제시('16.6월)

※(참고)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한계

- 1)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 →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작업을 한 금융회사·전문기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17.11월) 발생
- 2) 가이드라인에서 따른 비식별 조치 수준이 해외 유수의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비식별정보의 데이터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
 - 미국 등에서는 의료 교육 분야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요구 하는 비식별조치 수준을 금융분야 정보에도 획일적으로 적용
- ③ 보유 정보, 분석 노하우 등이 풍부한 CB사.카드사 등의 빅데 이터 분석·활용 업무가 제한적으로만 수행
 - * CB사의 민간부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업무는 '15년「신용정보법」개정으로 금지
- ** 카드사의 경우 부수업무로 수행 가능하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부담으로 빅데이터 업무에는 소극적
- □ 법.제도의 제약 및 문화적 특성 등으로 아직까지 정보분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도 미비**한 상황
 - o 자유롭게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된 데이터 산업의 발달도 미흡**
 - * 미국의 경우 약 2,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기관이 존재하며 주요 9개 중개기관의 연간 매출액은 4.3억달러로 추산(美공정거래위원회(FTC), '14)
 - ➡ 현재의 흐름 지속 시,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의 대응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
 -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간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법.제도.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

Ⅲ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u>< 기본 원칙 ></u>

- ①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우선 추진
 - o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선도
 - **소비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혁신성장**의 **모범사례**가 되어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을 제고**
- ② 법제도.산업.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 o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특히, 빅데이터의 경우 **기술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중심'(Principles-based approach) 법.제도로 전환
 - 민간 **데이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 하고, 공공부문은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
 -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중소형사 등으로 데이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데이터 중개.유통 기능을 강화
- ③ 정보주체의 권리를 내실있게 보호하여 국민신뢰를 제고
 - 그간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
 -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보호.보안의 실효성을 제고
 - ➡ 상기 기본원칙 하에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마련

<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

- ◆ (전략 **①**)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분석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
- ◈ (전략 ②)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노력을 병행
- ◈ (전략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보보호 › 보안을 강화하여, 금융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 구현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촉진

경제·금융시장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전략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 1.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
- 2.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운영
- 3. CB사·카드사의 빅데이터 시장 선도 역할 강화
- 4.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 전략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 5.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 (개인CB) 비금융특화CB 도입
- (기업CB) 진입규제 완화
- 6.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전략 정보보호 (3) 내실화

- 8. 정보활용 동의 내실화
- 9.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 프로파일링 대응권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 7.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 10. 금융권 정보활용 · 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전략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1.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

◇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

< 현 황 >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최장 5년)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 o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 · 이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 * 정보보호 규제의 빅데이터 분석 제약
 - 빅데이터 분석에 정보가 활용된 **모든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
 - 정보보유 기간 제한으로 장기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
- □ 이에 따라 EU·미국 등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노력 및 법ㆍ제도 개선이 진행 중
 - 익명화.가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려는 기술적 시도가 등장하고,
 -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ㆍ제도 개정
 - * 美: 의료(HIPAA)·교육(FERPA) , EU: GDPR 제정('16), 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5)
- □ 우리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까지 활용도는 미미**

< 개선방안 >

- □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
- EU 입법례 등을 감안,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
 -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 →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하여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
 - (가명처리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 * (예) 암호화 방식의 경우, 특정 개인을 비식별화 하는데 이용되었던 암호키
 - → 해당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 (cf. EU GDPR 사례)
 - ※ 익명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유기간 등의 규제를 배제

②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비식별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
 - *FPrivacy enhancing data de-identification techniques_(ISO/IEC DIS 20889)
-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
- ❸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일부 성과도 법제화
 -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전문기관**(금융보안원·신용 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 부과
- ◆ 사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 강화
 -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행정제재 부과
- ※ 이번 방안 외에, **관련단체·산업계·학계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

2.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운영

- ◇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
- 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 · 제공
 - * 신용정보원 : 전금융권 대출·연체·보증 정보, 체납·회생·파산 정보 등 보험개발원 :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지급 정보 등
 - **표본** DB*를 제공하여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토록 함
 - * 보유정보 중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뒤 비식별조치한 데이터베이스
 - 개별 금융기관 등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 · 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 서비스도 제공

※ 美 주택담보대출 DB 제공 사례

- '98년부터 현재까지 주담대 5%를 무작위 추출하여 대출조건 및 잔액/ 상환 및 연체정보/담보현황 등 상세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연방주택금융청(FHFA).소비자금융감독원(CFPB) 공동개발)
- ② **분석도구**, **보안체계** 등이 갖추어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 정보원에 구축하여 DB 분석·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
 -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DB를 분석한 뒤, **분석 결과만을 반출**、 **활용**토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도 차단(* Raw-data 반출은 금지)

<표준 DB 활용 프로세스 >



- ③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하여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
 - 우리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데이터 중개.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미스매칭 발생 우려
 - 사전 동의제도, 비식별 제도의 법적근거 미비, 보안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데이터 유통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
 - * 과기정통부, LG CNS, SKT 등에서 '데이터 스토어'를 운영 중이나 단순 통계 데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요자(분석자)가 원하는 데이터 유통이 저조
- □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 · 필요정보를 상호 확인
 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이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이 운영

※ (상세) 데이터 중개플랫폼 운영 개요

- (공급자) 플랫폼을 통해 제공가능한 정보의 요약정보*를 제공 * 데이터 속성, 규모, 이용기간, 분석효과 등을 소개하는 요약 자료
- (수요자) 플랫폼 內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플랫폼) 공급자와 수요자간 협의완료시 계약 절차 등을 지원



3. CB사・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 ◇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
- ①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 업무를 허용 (현재는 공공목적의 조사.분석업무만 허용)
 - o 풍부하게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견인
 - *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유수 국가에서는 CB사들이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
 - 빅데이터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평가모델 고도화 등 개인
 신용평가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
 - * 美 3대 CB사 중 하나인 Experian은 소비자를 인구통계·생애주기·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70여개의 집단으로 세분화 후 컨설팅에 활용
- ②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
 - * 현행법상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 신고사항이나, 아직까지 빅데이터 관련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4.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 데이터 공유ㆍ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

[]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지원

- *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등을 할 때, CB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자체 신용평가(CSS: Credit Scoring System) 결과를 함께 활용
- o 현재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시스템 고도화에 한계
 - * CB사 및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를 기초로 평가중이며, 통신. 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 활용은 제한
- □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
 - * (예) 통신(방통위), 전기.가스(산업부)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추진

2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활용을 확대

- 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 · CB사에 공유되고 있어,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 ⇒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③ CB.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

- o 현재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 CB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곤란 (cf. 일반 가계대출만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약 94.3만명 ['16년말])
- □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 · 금융권에 공유 추진

[전략❷]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 ◇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명확화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11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
 -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하여 CB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
 - 특화 CB사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
 임을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 특화 CB사의 도입 취지상, 기존의 개인 CB사와 같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제한
 - *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도입방안 (예시)
 - (정의) 비금융부문 개인신용정보(ex.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를 활용하여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
 - (진입규제 완화) 자본금 요건 완화(예: 현행 50억원 → 개선 10억원) 및 금융기관 출자요건(50% 이상) 배제 등
 - (영업행위 규제) 일반 개인CB사와 동일하게 적용(특히,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이해상충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
 - o 이를 통해,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
 - * 금융정보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평가의 세분화 등을 위한 추가지표 등으로 활용 가능
 - * (美 PRBC 사례) '02년 설립되어 '06년부터 수도・전기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 중
 - * (美 FICO 사례) 통신료・공공요금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 개발('15.4월) →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

- ② 기업 CB업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o 현행「신용정보법」은 **개인/기업 CB업을 구분하지 않아** 기업 CB업도 **개인 CB업과 동일한 진입규제*** 적용
 - * 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 의무
 - o 이에 대해 기업 CB업을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필요성이 큰 개인 CB업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 기업 CB업의 경우 **기업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기업간 거래에 활용**되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 기업정보는 정보보호가 원칙인 개인정보와 달리 금융시장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공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
 - o 기업 CB업은 개인 CB업과 분리하여, (i) **정보조회**, (ii) **신용 조사**, (iii) **신용등급 제공**(TCB 포함)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
 - * 현재 기업 CB업이 수행중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규정
 - [정**보조회**] 사업개요, 재무정보, 대표자 정보 등 기업정보를 일괄 수집 하여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제공
 - [신용조사]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일반기업, 공공 기관에 제공 → 거래처 및 납품업체 선정에 활용
 - [신용등급제공] 기업신용등급(기술신용등급(TCB))을 산출·제공
 - 유휴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현행 50억원→개선 인가단위별 5억원)하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제
- ③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 * 본인인증업무, 평가모형 개발 및 판매(솔루션) 업무 등

6.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
 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

< 현황 >

- □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본인정보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련 서비스업이 확대
 - o CB사는 유료고객에 대해 본인 신용등급, 등급산정의 기초가 된 신용정보 상세내역 등을 제공 중("본인정보조회서비스")
 - * CB사 본인정보 조회서비스 영업수익: '11년 243억원 → '16년 1,406억원
 - o **일부 핀테크 업체**가 (i) CB와의 제휴, (ii)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에 접속하는 방식 등을 통해 **통합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
- □ 다만, 아직까지 **법.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핀테크업체의 본인 정보관리 시장 진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무와의 구분이 불명확**
 - * 현행법상 신용조회업의 정의는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정보주체 본인"에게 본인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신용조회업으로 해석될 소지
 -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움*
 - * 금융회사·CB사 등과의 제휴관계를 기초로 고객정보에 접근할 경우, 계약관계에서 금융회사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
 - o 정보주체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스크레이핑 방식(Screen Scraping)*의 보안상 취약성 등도 문제
 - *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핀테크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로그인정보, 공인인증서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 고객계좌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취득

< 개선방안 >

- □ 해외사례* 등을 감안,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을 도입
 - * Mint사(美 핀테크업체)는 신용등급 및 예금/대출/카드내역 조회서비스, 온라인 가계부, 소득.소비패턴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고유업무)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
 - ⇒ 신용정보 내역 외에도 **본인의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 **파악 가능**
 - o (겸영.부수업무) 로보어드바이저 업무('자본시장법'),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을 허용
 - ⇒ 고액자산가 외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가격**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출시**가 가능
 - **(고객정보 접근권)**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 · 계약관계 없이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허용
 - ⇒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
 - (진입규제) 자본금요건은 최소화하되(예: 1억원)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 EU PSD2 사례 등 참고)
- □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권리행사('개인신용정보이동권')에 기반해서만 업무를 수행
 - o 현재의 스크레이핑 방식을 **정보보호 · 보안측면에서 우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대체
 - *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 고객이 핀테크업체 등의 본인정보 접근에 동의한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조회서비스에 필요한 고객정보만 핀테크업체 등에 전산상 제공
 - ※ EU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사례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핀테크업체**에 대해 고객계좌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신, 로그인정보·공인인증서·OTP 등 **개인보안인증자료** (Personalised security credentials)의 활용은 **엄격히 금지**

7.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

- ◇ 산업의 특성, 경제、금융시장 영향력, 여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구조 및 행위 규제를 도입
- ① 개인 CB업은, 국민경제 영향력*을 감안하여 책임성 확보를 강화
 - * 전국민(약 4,500만명)에 대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 ①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규제 전면 적용
 - *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미충족시 의결권 제한 등 제재
 - ② 개인신용평가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를 도입

※ 신용조회사 행위규제 필요사항 (예시)

- 성별, 학벌, 출신지역, 직업군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평가지표 공개
- 평가주체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및 이의 제기권 및 절차 보장
- ② **신용등급 제공업무**(TCB 포함)를 수행하는 **기업 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추어 규제 도입
 - * 기업 CB업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채권 신용평가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율할 필요
 - ①「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 등에 적용되는 **임원 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를 도입
 - ②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

<u>※ (참고)「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 행위규제</u>

- 평가대상에 대해 신평사(계열사 포함)의 상품ㆍ서비스 구매 강요 금지
-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 신용평가 결과 변동내역 평가 방법론 신용평가서 등 공시 의무화

[전략❸] 정보보호 내실화

8.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 ◇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
- ①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 (고객 요구시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

* (유사사례) 자본시장법상 간이투자설명서 제도

- 집합투자증권 모집.청약 권유 시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로 대체 가능
- ②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시 보조지표로 제공
 - 제3의 기관(예:금융보안원)에서 정보의 민감도,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평가등급을 산정.제공
- ③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 현재는 일괄 동의관행(무더기 동의)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약
 - o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
- ※ 추후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하여, 제한된 영역부터 사후 거부제 (Opt-out)*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 사후에 주기적으로 정보 활용내역을 통지하고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

< 우선 도입 가능 영역(예시) >

- ①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에서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시
- ② 당초 거래한 상품과 동종.유시상품에 대한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활용시
- ③ 기술적으로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물인터넷 분야 등

9.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자기 정보의 활용권을 보장
- ①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여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
 - * 프로파일링 (예: 알고리즘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보험료 자동 산정 시스템 등)
-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정보침해 우려도 완화하여 데이터 활용 관련 국민신뢰 제고

<u>※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사례</u>

- . [EU 사례] 인적개입 요구권.의견 표현권.설명 요구권.이의 제기권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GDPR, '18.5월 시행)
- . [국내] 대표적인 프로파일링 사례인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강화한 바 있음('18.1.30일 발표)
- ②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본인정보 관리.활용을 보장
 - *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로 하여금 **그 본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간편하게 선택.
 제공받고, 적극적인 신용관리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

<u>※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활용 사례</u>

- . [개인신용평가 관련] 개인이 해당기관에게 본인의 사회보험료, 통신료 납부실적을 CB사.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평가상 가점 수취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거래 금융기관에게 본인 거래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자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받음
-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의 관련 시장
 진입 여건도 개선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

10.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산업 등의 보안조치의무를 강화
- ① '17년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
 - *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실태 현황 등
 -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단순한 업무수행 실적보고에 그치며, 취약점 평가 및 보완조치 의무 등은 부재
- ⇒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방안 >

- (대상) 금감원 검사 대상인 전체 금융회사 (3,429개*)
 - * ('16년말 현재) 금융지주(9), 은행(59), 저축은행(80), 여전사(83), 보험(57), 상호금융(2,275), 금투업자(682), 대부업자(148), 신용정보회사 등(32)
- (점검항목)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8개 대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
 - * 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②제공, ③ 처리위탁, ④ 안전한 보관, ⑤ 파기, ⑥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⑦ 내부통제, ⑧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평가방식) 상세 점검항목별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점수화.등급화 ⇒ 취약부문 보완조치 요구, 테마검사 실시 등

② CB사 등의 정보보호·보안 관련 규제도 강화

- o CB사 내 **데이터 처리 부서와 영업 등 활용부서 간 Chinese** wall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금융위의 금융회사, CB사 등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하여, 정보유출ㆍ침해사고 등에 대응한 규제 실효성 확보
 - * 자본시장법(§416), 보험업법(§131) 등에서는 旣 도입

IV. 기대 효과

- □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
 - 혁신적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핀테크업체 등의
 진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 o 금융분야 데이터와 보건의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다른 산업 분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융합신산업 성장도 촉진
-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도 강화
 - o 개인의 성향·소비·노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환경 마련
 - 특히, 그간 불이익을 겪어왔던 청년.주부.고령층 등의
 금융이용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
- □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여 중소형 금융회사, 핀테크, 창업기업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
 - o 풍부한 **데이터 인프라 및 유통시장이 형성**될 경우, 기존 대형금융사의 **정보독점이 완화**되고 시장내 **정보격차가 축소**
 - 전문적인 데이터 산업이 육성되어, 정보분석 이용역량이 부족한 핀테크, 영세자영업자에도 관련 서비스가 제공
- □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되고 **정보보호.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o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응하여 정보주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 가능
 - o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위기 상황에도 효율적 대응

V. 향후 추진계획

- □ 국민의 삶에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 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
-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중 구축ㆍ시범 서비스**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

< 주요과제 추진일정 >

	추진 과제	추진 일정	
	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②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금융정보 DB ·분석시스템	'18.下 서비스 실시 및 신정법·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분야		빅데이터 중개플랫폼	'19.上 시범서비스 실시
빅데이터	③ CB사·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CB사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활성화		카드사	'18.下 카드업계 간담회 후 부수업무 신고 등 추진
	④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금융회사	'18.上관계기관 협의 (필요시 관련법령 등 개정)
		신용정보원 정보공유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금융분야	⑤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데이터산업	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경쟁력 강화	① CB산업 책임성 확보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⑧정보제공 동의제도 내실화		'18.下시행 (필요시 법개정)
정 <u>보보호</u>	⑨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
내실화	 100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정보활용. 관리 상시평가제	'18.上 신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시 법개정)
		그 밖의 정보 보호·보안 강화	'18.上 신정법 개정 추진